

『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7월 8일

제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2009년 6월 9일 제정되어 관내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, 보건복지부에서 동일사업으로 2013년부터 여성장애인 일부(1~3급)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, 2015년부터는 전체(1~6급) 여성장애인에게 확대 지원하게 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」에 의거 폐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」의 폐지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장애인복지법」
 - 「지방자치단체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」
- 예산조치 : 기존 편성예산 추경 시 삭감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본 폐지조례안은

2009년 6월 9일 제정되어 2010년부터 관내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지원금을 1~2급 150만원, 3~4급 100만원 및 5~6급 70만원을 지원 하였으나, 보건복지부에서 동일사업으로 2013년부터 여성장애인 1~3급, 2015년부터는 전체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게 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」에 의거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